|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 | 보도자료 | 보다 나은 정부 |
|---|---|---|

**2019년 2월 14일(목) 11:00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배포일시 | 2019. 2. 14.(목) | 담당부서 | 에너지안전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이희원 과장(044-203-5130) | 담 당 자 | 오재철 서기관(044-203-5131)) |
| |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홍영근 과장(044-205-7470) | | 임준형 소방령(044-205-7481) |
| | 환경부 화학안전과 송용권 과장(044-201-6831) | | 최재석 사무관(044-201-6837) |
| |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김충모 과장(044-202-7752) | | 조정익 사무관(044-202-7759) |
| |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전상률 과장(044-205-5250) | | 양기현 사무관(044-205-6151) |

#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, 석유 화학물질 등의 저장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폭넓게 정비한다

## - 범정부 합동『석유·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』발표 -

◇ [석유·가스]

❶ (안전점검·기준 개선) 석유저장탱크 중간검사제도('20.상) 및 차등화 된 가스저장시설 정밀안전진단 주기 도입(현 5년→1~7년, '19하)

❷ (화재경계지구 지정시설 관리강화) 석유저장시설(8곳)을 화재경계지구로 최초 지정('18.12월)하여 강화된 화재안전 관리규정 적용

❸ (외부위험요인 보안체계) 국가보안시설 확대 지정(50만배럴급 5개 석유저장시설 추가, '19상), 소형열기구 금지구역 설정 ('19.2~)

❹ (기업의 안전투자 촉진) 조세특례제한법법의 안전투자 세제지원 확대

* '18.12월 중견(3→5%)·중소(7→10%)기업의 세액공제율 인상 완료→ 공제대상 확대 추진

◇ [유해화학물질]

❶ (고위험도 시설 안전진단) 사고영향이 큰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'19년부터 정밀장비를 활용한 안전진단 실시('19~'22, 2,188곳)

❷ (사고대응체계 강화) 전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(7,000곳) 시설 배치도를 전산화하여 사고 시 소방·환경·지자체에 실시간 제공

❸ (안전교육·투자 확대) 외국인근로자 대상 화학안전 전문교육 확대, 화학물질 배출 처리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대상 확대



□ 정부는 2.14일(목)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이낙연 총리 주재)에서 『**석유·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**』(이하 대책)을 발표하였음

□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('18.10.7) 등을 계기로 우려가 커진 **석유·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** 위해 전국적으로 **정부합동 안전점검***을 실시하였으며, 제도개선을 위해 **관계부처 안전대책반(TF)을 운영**해 옴

* (석유·가스) '18.10.24~11.30일까지 49개소 저장탱크(276기) 점검
(유해화학물질) '18.12.3~'19.1.18일까지 총 90개 업체, 저장시설 1,433기 점검

○ **모든 국민이 석유·가스 및 유해 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해 안심**할 수 있도록 **관계부처 합동***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함

* (석유·가스) 산업부, 노동부, 소방청 등 (유해화학물질) 환경부, 소방청 등

– 다양한 전문가·업계의견, 현장점검을 통해 제기된 사항 등을 토대로 **석유·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으로 4대 분야 12개 과제**, **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과제**를 도출하였음

## 【『석유·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』 주요내용 】

### 1 기존 점검제도와 안전기준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 (노동부, 산업부, 소방청)

○ **(점검주기 단축)** 사고 위험요인의 조기 인지를 위한 **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**(11년) 기간내 **중간검사제도**('20.상)**를 도입**하고,

– **가스 저장탱크는**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하여 **정밀안전 진단주기**(현행 5년)**를 1~7년으로 차등화**('19.하)하기로 함

○ **(감지장치 설치)**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**석유저장탱크** 주변에 **화재감지기와** 탱크지붕에 **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의무화**('20.상)하고,

– **가스저장탱크에는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*를 활용토록 의무화**('19.상)하여 누출 시 신속한 인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

* 기존 탱크상부에 설치되어 왔던 가스누출검지기는 바람 등의 가스누출 확인에 어려움→ 사업자가 휴대용 또는 고정식 정밀장치를 추가보유·설치토록 제도화

### 2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최초 지정하여 화재 안전관리 강화 (소방청)

○ 작년 12월 주변지역과 인접하고 **화재 위험이 높은 8개 석유저장시설*에 대해 최초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**한 바 있음

* 송유관공사 저유소 6개, 석유공사 비축기지 2개소 지정 旣완료('18.12월)

○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석유저장시설은 소방특별조사(연1회 이상), 합동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**강화된 안전관리를 해 나갈 계획임** ('19)

### 3 외부 위험요인에 대한 보안·감시 체계 강화 (국정원, 산업부, 소방청)

○ 외부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의 보완 필요성이 높아, **석유저장시설에 대한 보안·감시체계를 강화**하겠음

- 강화된 보안규정이 적용되는 **'국가보안시설' 지정기준을 완화**하여 **국가보안시설을 5개 추가지정**

○ 사업자가 외부 위험요인을 평가·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, **외부 기관이 그 적절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**하기 위해 관련 **법령을 개정**할 계획임

○ 또한, 지역 소방서가 「**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**」**을 설정**하여 소형열기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계획임 ('19.2)

### 4 관계부처간 긴밀한 안전 협력체제 가동 (행안부, 소방청, 산업부, 노동부, 환경부)

○ 관계부처 합동으로 '**석유·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 기구***'를 구성·운영하여 국제기준과 국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**국내안전기준**을 지속적으로 **검토·조정**해나가겠음 ('19.3~)

* 재난안전법상의 안전기준심의회에 에너지·정보통신 분과를 에너지 분과로 분리 운영하고 산업부, 환경부, 노동부, 소방청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

○ **사고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초동대응**을 할 수 있도록 소방청 매뉴얼을 토대로 **석유·가스공사의 위험물 사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별도 제정***하고, 석유·가스저장시설 **화재진압을 위한 표준작전절차**도 제정('19.하)할 계획임

* 사고시 탱크내 저장물 이송계획, 위험물 누출·화재시 재난대응 프로세스 등



### 5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(기재부, 산업부, 소방청)

○ 기업의 안전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**안전설비 세액공제율 인상(중견: 3%→5%, 중소: 7%→10%)을 지난해 12월에 법 개정을 통해 완료**하였으며,

○ **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*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(LPG)시설을 추가**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

* (現공제대상) 소방시설, 산업재해예방시설, LNG공급시설의 안전장비·시설 등

## 【『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』 주요내용 】

### 1 위험 수준에 따른 실효적 예방활동 전개 (환경부, 소방청)

○ 사고 시 주변 환경에 영향이 큰 **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***에 대해 **고강도 안전진단****을 **올해부터 실시**하여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음 ('19년 106개소 / '19~'22 총 2,188개소)

* 사업장 영향범위 내 주민 수, 다중이용시설 유무, 취급물질 등을 고려하여 선정

** 기존점검 대비 소요시간 대폭 확충(건당 76 → 515인시(man-hour)),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오차를 최소화하고 미세결함까지 잡아내는 정밀 안전진단 실시

○ 아울러, **사고 다발 사업장, 중소·노후사업장 등 취약시설**에 대해서는 집중점검과 함께 **무료 안전상담(컨설팅) 및 기술지원 등을 병행함**('19년 1,300곳)

### 2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 (환경부, 소방청, 지자체)

○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,000여개 **사업장의 시설 배치도·취급물질·취급량을 전산화***하여 **사고시 대응요원에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**토록 하겠음

*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시스템(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)

○ 지자체가 참여하는 **화학사고 합동훈련을 대폭 확대**('18년 19건 → '19년 40건)하고, 지역 소방관서의 **화학사고 대응장비 보강**, 대응요원 **전문능력 인증제 도입** 등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**인적·물적 대응능력을 확충할 계획**임

### 3 **화학물질 안전교육·투자 활성화** (환경부, 기재부)

○ 현장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용 **화학안전 동영상 교재 제작,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추가 지정**('18.12월, 1→4개소) 등 교육 저변을 확대할 계획임

○ **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*에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을 추가**하여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, **화학사고 환경기술개발사업**에 따른 안전 장비·기술을 민간에 적극 제공·활용할 계획임

* (현공제대상) 이상상태 시 사고대비 안전시설, 압력상승 방지시설 등 (11개 항목)

※ 붙임 「석유·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」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오재철서기관(☎ 044-203-5131), 환경부 화학안전과 최재석사무관(☎ 044-201-683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